

大學의 學期制의 類型과 改善要因

— 여름學期의 多角的 活用을 中心으로 —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助教授)

學期制의 改善은 근본적으로 大學의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의 側面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教授·學習의 效率性과 經營管理의 效能性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學期制의 改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여름學期의 開設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I. 序 言

大學의 學期制 또는 學曆(academic calendar)은 大學의 學事行政이나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에 있어서 基本骨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大學의 學期制는 歷史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단한 研究課題가 되어 왔으며, 또 多樣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今世紀 後半에 들어서면서 활발해진 大學의 役割과 機能의 擴張, 大學의 教育的 卓越性과 社會的 責務性, 그리고 大學人口의 急激한 量的成长과 이에 부응한 質的向上이라는 명제 아래 시도된 많은 學事改革提案들과 더불어, 大學의 學期制에 관한 研究는 深化되었다. 예컨대 Heiss가 지적하였듯이,¹³ 複數專攻制나 早期卒業制 등의 學事改革은 傳統의 學期制度에 반하여 다양한 期間의 學期制(variable length terms)의 發展可能性을 研究하도록促進하였다. 뿐만 아니라 知識의 構造的 變化,

教授學習方法의 刷新, 教授들의 學問의 類型의 變化, 그리고 學生들의 生涯職業 热望의 變化 등은 대학으로 하여금 教育의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는 새로운 學期制로 講究하도록 促求하게 되었다고 Heiss는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學期制에 관한 研究改善努力은 美國의 경우, 특히 1971年에 學術院(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이 그들의 85個項目에 달하는 “高等教育 學事改革 提案” 중, 39번째 항목에서 大學의 學期制에 관한 改革의 必要性을 제시한 데서²³ 더욱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지난 10餘年間은 美國 大學의 學期制改革期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數의 大學들이 제 나름 대로의 學期制에 관하여 독특한 研究와 實驗을 시도한 시기였다. 이를 여러 大學들의 共通의 관심을 한마디로 要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보아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떻게 學期制를 運營하면 教授들에게 가르치는 責務와 研究 그리고 社會公共奉仕 機能을 效率的으로 發揮할 수

이라는 重任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교수의 상당수를 外國教育機關에 의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절적 향상 면에서나 양적 확보면에서 종래와 같은 海外依存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내 大學院教育의 强化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한국의 대학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었다고 본다.

7. 研究活動의 强化

현재의 연구원(소)들은 綜合大學校의 경우,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원(또는 연구소)과 단과대학에 부설되는 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으나, 상호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한된 규모의 예산으로 研究課題나 人員, 施設 등에 있어서 중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研究機構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기존 연구원(소)의 연구기구를 관련분야별로 統合하고 부족한 기구를 補充하여 大單位의 綜合研究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構想은 장차 대규모적인 성격을 띤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研究主題의 性格 또한 여러 학문분야의 共同參與를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구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問題點에 비추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소를 대단위화하고 재정 및 행정을 일원화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기 쉬워서 최대한의 自律을 전제로 하는 연구활동과는 양립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소의 대단위화에서는 自律性의 保障에 유의하여 재정적, 행정적 규제나 제약을 피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8. 社會奉仕活動의 擴大

大學院中心大學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중점목적에 비추어보면, 적절적인 형태의 對社會奉仕活動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학생활동이나 대학 및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對民奉仕, 現職教育, 短期職業訓練課程 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계

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教育施設・設備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개방, 활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회교육을 전담할 社會教育館을 설립하여 전전한 국민정신의 함양, 직업기술의 연마, 국민건강, 증진, 학술과 문화의 진흥, 정서의 순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급격한 增的膨脹과 지식과 기술의 短命 때문에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배울 수 없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가 요청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각종 研修와 現職教育이 다양하게 요청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도 교육이 실시되는 平生教育 체제로 교육제도를 바꾸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원 중심 대학의 중점목적이 대학교수, 고급 연구요원 및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대학원은 대학교수 지망자를 위한 職前教育(pre-service education)을 실시하고, 전문 대학원은 각 분야의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現職教育(in-service education)과 再教育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9. 國際的 學問交流의 推進

大學의 國際性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에 國際的인 學術交流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요청된다.

(1) 연구활동의 국제적인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交換學生 및 交換敎授制를 강화한다.

(2) 전임교수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또 일정기간 행정 보직을 맡은 교수들의 연구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海外研修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오는 留學生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외국학생과의 교제의 場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한 國際學生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學期制를 改善하면 學生들에게 보다 많은 選擇의 餘地를 제공하여 그들 각자의 능력과 흥미, 그리고 必要에 따라 效能의 으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다소 빠른 감이 있다 하겠으나,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4月 大學教育協議會가 大學의 學期制와 授業運營效率化에 관련하여 일련의 大學發展方案들을 政府에 建議하였음은 매우 注目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大學의 學期制가 가장 多樣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研究發展되어 온 美國 大學들의 경우를 分析하고 그 示唆點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意義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도 우선 美國 大學의 學期制의 諸類型을 먼저 紹介하고 다음에 大學 學期制의 改善 問題를 考察하기로 하겠다.

II. 學期制의 諸類型

1636년 英國의 Cambridge 大學의 본을 따서 세워진 美國의 Harvard 大學은 1년을 4개의 期間으로 區分하였다. 즉 Michaelmas 學期(10月 10日부터 12月 16일까지) Hilary (또는 Leut) 學期(1月 13일부터 부활절 前日까지), 그리고 Easter 學期 부활절 후 제11일째부터 7일 첫 번째 화요일에 졸업식을 가진 다음 둘째주의 금요일까지)의 3개 學期와 하나의 放學期間(Trinity Term: 졸업식 후 금요일부터 10月 9일까지)으로 區分하였다.³⁾ 이 때부터 19세기 초엽까지의 美國의 大學들은 대체로 3學期制로 教育課程을 編成하여 運營해 왔다. 그러다가 1819年, Virginia 大學에서 처음으로 2學期制를 채택하여 사용하면서 그것은 今世紀 中半까지 많은 美國 大學들의 典型的인 學期制가 되었다.

그러나 1650年代에 始作하여 1970年代에 와서 절정을 이룬 美國 大學들의 學期制 改革은 이제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 基本的인 類型의 學期制를 定着시키게 되었다. 1976/1977 學年度의 美國의 4年制 大學들을 대상으로 調査한 Oleson의 報告⁴⁾에 따르면, 다음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早期 2學期制가 全體의 48%에 해당하는 大學들

에 의하여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었다.

〈表-1〉 美國 大學의 學期制의 類型과 採擇大學數

類型	採擇 大學數 (%)
① 傳統的 2學期制	7
② 早期 2學期制	48
③ 4-1-4 制	13
④ 4學期制	24
⑤ 3學期制	3
⑥ 其他	5

이제 이를 하나 하나에 대해 節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傳統的인 2學期制(Traditional Semester)

傳統的인 年間 2學期制는 平均 15주 내지 20주間의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된다. 1학기는 대체로 9月中旬(노동절 이후)에서 1月下旬까지, 2학기는 1月下旬 또는 2月初旬에서 6月初旬까지 이어지며, 6月中旬부터 9月初旬까지의 약 3개월간의 긴 여름방학 기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대체로 4~5개 科目(12~15學點)을 수강한다.

이러한 가장 傳統的이고 오랜 歷史를 가진 2學期制는 15餘年前만 해도 全體 高等教育機關의 1/3가량의 大學들에 의하여 活用되었으나, 이제는 그 數가 점점 줄어, 1978/1979 학년도에는 불과 6%의 大學들만이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傳統的인 2學期制는 앞으로 검토하게 될 그 어느 다른 學期制들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實際授業時間과 갖고 있으며, 따라서 各 教 科目에 대한 보다 철저한 教授學習이 가능하다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教授나 學生들이 年間 教授·學習하는 科目的 數가 적고, 餘他 多學期制들의 경우처럼 빈번한 受講登錄, 試驗期間 등의 回數도 월씬 적으므로 비교적 긴期間에 여유를 갖고 教授學習을 展開할 수 있다. 특히 3個月間의 긴 여름방학기간이 반드시 모든 教授나 學生에게 必要한가의 反問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여름철

임시적업을 구하는 데 지극히 적절한 시기로 관습화되었다. 본래 傳統的인 2學期制의 도입은 學問의 理由에서 出發하였기보다는, 오히려 農業經濟의 夏季農作期間을 고려하여 出發하였다⁶⁾고 주장할 만큼 여름방학을 큰 長點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학생들이 동시에 4~5개 과목을 족어도 15주 이상 수강하다 보면, 결국 4년間に 통산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科目數가 극히 制限의이라는 비난을 免치 못하고 있다. 즉 學生들의 立場에서 볼 때, 選擇의 餘地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教科目들이 全部 15주 이상의 긴 時間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不必要하게 內容을 길게 늘려 時間을 채우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教科內容이나 目的에 따라 教授·學習期間 또는 全體時間數를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대단히 弱하다는 점이 傳統的인 2學期制가 갖고 있는 缺點 中의 하나이다. 이러한 缺點들을 補完하기 위하여 몇몇 大學들에 의하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例를 찾아보면, Ohio 주의 Muskingum 대학의 “Octal Calendar”를 들 수 있다.⁷⁾ 1978/1979 학년도부터 活用되기 시작한 이 學曆은 2개의 16주로 이루어진 傳統的인 2學期를 각각 2개의 8주로 區分한다. 즉 4개의 期間으로 區分하여, 각 期間마다 수강신청을 하되, 한 期間에 2개의 教科目(6學點)과 1개 또는 그 이상의 單位(1單位는 1/4科目에 해당)를 기본 수강량으로 한다. 또 다른 예는 Missouri 州 所在 Stephens College의 경우로서,⁸⁾ 이 大學은 14주를 한 학기로 하는 傳統的인 2學期制를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教科目的 길이를 3.5주, 7주 및 14주 등 세 가지로 다양하게 개설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選擇과 配合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2. 早期 2學期制(Early Semester)

앞서의 傳統的인 2學期制에서는 1학기가 1月下旬에 끝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12月末 즉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年末年始 期間의 非效率의in 學事運營이다. 즉, 이러한 쓸데없이 낭

비하는 기간(lame duck period)을 줄이기 위하여, 일찌기 1843年 Princeton 大學에서는 傳統의in 2學期制의 始作日程을 앞으로 당겼다.⁹⁾ 즉 1학기는 8月末부터 12月中旬까지(크리스마스 以前), 2학기는 1月中旬부터 5月中·下旬까지로 앞으로 당겼다. 이러한 早期 2學期制는 그 후 많은 大學들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여, 1978/79 학년도에는 全體 4年制 高等教育機關 中 50%以上에서 채택, 활용될 만큼 보편화되었다.¹⁰⁾

早期 2學期制는 근본적으로 傳統의in 2學期制와 모든 面에서 같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前後한 年末年始 期間에 教授나 學生들이 教授·學習에 있어 充實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나오는 少數의 教授와 學生들을 위하여 할 수 없이 學校 全體의 모든 시설에 난방을 해야만 하는 非效率性을 제거한다는 큰 利點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 4—1—4制(Interim Calendar)

4—1—4制는 4個月(9月—12月 : 14~16주), 1個月(1月 : 2~4주), 4個月(2月—5月 : 14~16주)로 이어지는 3個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2學期制에서 1학기와 2학기간의 1月한 달을 中間學期(interim term)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中間學期 동안에 학생들은 個別研究, 現場見學, 海外學習旅行 등을 통하여 特別 프로그램이나 과제에 대한 集中研究를 하게 된다.

이러한 4—1—4制는 일찌기 1930년대에 Hiram 대학 등에서도 연구된 바 있었으며,¹¹⁾ 1958년도에는 Hampshire 대학에서 “1958 New College Plan”으로 기획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실제로 개발되어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1961年 Florida 장로교대학(지금은 Eckerd 大學으로 바뀜)에 의해서이다.¹³⁾ 그 후 4—1—4制를 채택하는 大學들의 數는 급격히 增加하기 시작하여 1978/79학년도 현재 21%의 4年制 대학들에 의하여 活用되고 있다고 한다.¹⁴⁾

앞서 早期 2學期制의 경우처럼 4—1—4制는 두 學期間의 “쓸데없이 낭비되는 기간(lame duck period)”을 없앤다는 利點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長點은 두 學期間의 새로운 기분전환

을 教授나 學生들이 가질 수 있다는 點이다. 즉 中間期間을 통해서 多學問的인 教授學習 實驗을 전개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은 特別한 선택 과목을 正規學期에 신청하지 않아도 이 기간을 통해서 個別研究로 해낼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1月 中間學期에 대하여 否定의 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2—4 주간의 中間學期는 실제로 너무 짧아서 형식에 그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교수나 학생들에게 不必要한 加外作業만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非生產의인 財政·行政負擔만을 必然적으로 加重시킨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短點들을 補完하기 위해서 Western Maryland 大學, Idaho 大學, Austin 大學(Texas 州 所在, Ottawa 大學(Kansas 州 所在)등에서는 4—1—4制의 새로운 改革方案을 각各 獨特하게 研究創出하기도 하였다.¹⁵⁾ 예컨대, Idaho 大學에서는 4—1—4를 12주—6주—12주로 하여 中間學期의 기간을 늘렸다. 또 Ottawa 大學에서는 4—1—4를 7주—7주—4주—7주—7주의 5개 기간으로 區分하여 7주기간에는 2個科目을, 4주기간에는 1個科目만을 수강하게 하여 集約의인 教授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979/80학년도부터 Ottawa 대학은 그 大學의 全體 開設教科目 中 50%는 典型의인 2學期制에 의하여 운영하고, 다른 50%는 앞에 제시한 7—7—4—7—7制로 운영하고 있다.

4. 4學期制(Quarter)

앞서 살펴본 세 가지 類型의 學期制들은 모두 여름방학기간을 授業學期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4學期制는 1年을 4個의 10~12주로 區分하여 4個의 學期를 設定한다. 學生들은 每學期에 대체로 3科目(9學點)씩을 수강하며, 年間 4個學期 中 2~3個學期 이상만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이와 같이 여름방학기간을 正規學期로 인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1892年 Chicago 大學의 設立計劃 속에 나올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싹텄다. 1978/79 학년도 현재 美國의 全體 4年制大學 中 18%가 이러한 4學期制를 活用함으로써,¹⁶⁾ 4學期制는 앞서 언급한 早期 2學期制, 그

리고 다음에 언급할 3學期制와 더불어 學期制의 3大典型을 이루고 있다.

4學期制는 매 학기마다 적은 數의 教科目을 갖고 지극히 集中的인 教授學習을 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갖고 있다. 1年을 通算하거나, 4年을 통산해 볼 때, 어느 다른 學期制의 경우보다 다양한 많은 數의 教科目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4學期制는 차광을 받고 있다. 특히 4學期制는 教授와 學生들에게 放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며, 빈번한 學期轉換을 통하여 單調로움을 防止할 수 있다는 點에서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行政事務나 教授業務 등은 상당히 加重된다는 점이 커다란 短點이다. 빈번한 學生들의 受講登錄, 成績處理 등이 바로 그 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10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特定教科目的 경우 教授學習이 지극히 피상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10주가 문제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教授나 學生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休講, 缺講했을 경우 그 教科目的 教授學習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또한 매 10주마다 學期가 바뀜은 어떻게 보면 教授나 學生들에게 매우 단조롭고 고달픈 學期初와 學期末을 자주 반복하여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必要가 크다.

5. 3學期制(Trimester)

앞서의 4學期制의 경우처럼, 3學期制도 여름방학 기간을 하나의 완전한 學期로 인정하고 있다. 3學期制는 3개의 15~16주 학기로 구성된다. 즉 1學期는 9月에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학기는 1月에서 4月 15日頃까지, 3학기는 4月末 또는 5月初부터 8月 20日頃까지이다. 傳統적으로 2學期制에서는 1學期 동안에 4科目씩 8科目을 수강하도록 하나, 3學期制에서는 한 학기에 3科目씩 3學期간에 9科目을 수강하도록 합이 常例이다. 이 점에서 3學期制는 “3—3”制라고도 불리운다.¹⁷⁾

이러한 3—3制는 1950年代初 Goucher 大學에서 연구검토되기 시작하여¹⁸⁾ 점차 확대되어 나가서, 현재는 全體 4年制大學 中 3~4%가 채

택하고 있다.¹⁹⁾

3—3制는 大學의 時間과 施設의 效率的 活用을 통하여 年間 無休運用을 기하고자 하는 데 本來의 취지가 있다. 특히 늘어나는 學生數와 急增하여 增大되는 프로그램을 制限된 時間과 施設內에 效率的으로 收容하기 위한 方策으로 講究된 學期制이다. 앞서의 4學期制의 경우처럼, 教授와 學生들은 自身들에게 適合한 한 學期를 선택하여 放學으로 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이는 傳統的인 2學期制나 早期 2學期制가 지니고 있는 긴 여름방학의 利點을 살리면서 同時に 그 기간을 預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구의 기회로 多目的化시키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4學期制의 경우처럼, 이 3學期制도 教授나 學校行政陣에게는 많은 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다. 教授人的 資源이 풍부한 경우에는 別問題가 있을 수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教授들에게 돌아가는 負擔은 매우 크다. 또한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每學期別 學生들의 꾸준한 그리고 고른 分布의 등록이 있어야만 財政的으로 運營해 나갈 수 있다는 制限點이 있다.

6. 其 他

美國의 모든 社會的 制度나 教育體制가 多樣性을 根幹으로 發展하였듯이 大學의 學期制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多樣하다. 더우기 각 大學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매우 獨特한 學期制를 부단히 研究實驗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多樣性은 더욱 深化되고 있다. 앞에 열거한 다섯 가지 類型外에도 매우 獨特한 學期制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University of Wisconsin—Oshkosh에서는 기본적으로 2學期制를 채택하고는 있으나²⁰⁾ 그 實際運用에 있어서는 다른 類型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大學에서는 1학기 17주, 2학기 17주를 각각 7주+7주 +3주의 3개의 “모듈(modules)로 區分編成하고, 여름 학기는 8주로서 이는 2개의 4주간씩의 모듈로編成하고 있다. 學生들은 한 教科목의 한 개의 모듈만도 수강이 가능하며, 모듈의 여하한 組合을 통한 수강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강기간은 學生들이 수강하는 모듈의 수에 따라 3주, 4주, 7주

……17주 등 떡이나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學期制는 상당히 혼잡하고 교수나 學生들에게 쉽게 피곤을 느끼게 하며 수강신청 업무 등에 있어서 過重한 事務負擔을 피할 수 없는 결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改革的 시도는 그것이 學問領域 相互間의 轉交(interdisciplinary)를 통한 教授學習을 可能하게 하고 있으며, 傳統的인 관에 바운 듯한 教授學習體制에 세롭고 多樣한 體制의 創出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을 받을 만하다.

모듈을 근간으로 학기제를 운영하는 또 다른 大學들 가운데 代表的인例를 하나 더 들면 Colorado 大學의 경우이다.²¹⁾ 이 大學은 1년을 9개의 모듈로 编成하고, 한 개의 교수모듈의 기간은 3·5주이며 여기에 4~5일간의 짧은 휴식기간이 따른다. 學生들은 하나의 모듈기간 동안 1개의 과목만 수강이 가능하고, 한 학급의 학생수는 14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과목만을 매번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教授-學習을 하여, 그 과목의 교수와 學生들이 지극히 융통성 있는 教授學習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特色이 있다. 그러나 教授에게는 年間 여터 科目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負擔이 따르고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工夫를 해야 하는 學生들의 學習負擔도 매우 크다. 더구나 學生들은 함께 공부하는 한 모듈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서로 깊이 있는 사귐을 갖기 어렵다. 행정업무의量도 다른 學期制에 比하여 엉청나게 많으며, 施設面에 있어서도 우선 教室이 다른 學期制의 경우보다 훨씬 많이 必要하게 된다는 점에서 非效率의이라고 하겠다.

III. 學期制의 改善要因

學期制를 改善하고자 할 때 관련된 그리고 반드시 檢討해야 할 要因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本章에서는 昨今에 建議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大學의 學期制와 授業運營 效率化” 方案을 念頭에 두고 몇 가지 關聯要素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論議의 焦點을 “여름學期”에 맞추도록 하였다.

1. 學事改革과의 關聯

여름學期制의 도입은 두 가지 方向의 時間關聯을 피할 수 없다. 하나는 時間을 短縮하는 方向이고, 다른 하나는 時間을 延長하는 方向이다. 즉, 前者は 4年이라는 大學의 正規學位 프로그램을 4년이 걸리지 않고서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側面이고, 後자는 4年 또는 8學期以上을 登錄하여 正規學位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側面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여름學期制는 지금까지 試圖되어 온 諸般 學事改革事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前者의 경우, 예전에 여름學期를 통하여 學點을 追加로 취득한 學生들에게는 그만큼 또는 一定期間만큼 早期卒業을 許容하는 能力別卒業制度와의 관련 속에서 여름學期制를 捷径해야 함을 뜻한다. 反面 後者の 경우에는 特定教科目에서 失敗한 학생들에게 再受講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거나 또는 不足하다고 생각되는 分野의 追加補習 教育機會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여름學期의 도입이 肯定的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앞서 美國 大學들의 學期制의 諸類型을 檢討하는 가운데 言及된 바 있듯이, 여름學期는 教育課程을 研究實驗하거나, 또는 各 學問領域 相互間의 轉交(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통한 새로운 教科目의 開設 可能性을 탐색하는 實驗課程으로 活用될 수 있다는 觀點을 注視할必要가 매우 크다. 傳統的인 2學期制에서는 過重하게 編成된 教科課程 속에서 實驗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없었으나, 여름學期의 도입은 教科課程編成과 運營에 비교적 융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은 곧 새로운 教育 프로그램을 創案하고 實驗할 수 있는 憲策적인 促進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2. 平生教育 機能發揮와의 關聯

오늘날 大學은 平生教育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教育프로그램의 開始 및 運營에 있어서 必要한 改革的 方案을 講究하도록 끊임없이 要請을 받고 있다.²³⁾ 여름學期制는 이러한 要請에 따른 적절한 反應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大學들이 平生教育觀點에서 특히 成人們을 대상으로 한 教育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一部大學들이 成人們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特色 있는 領域에서 短期 教育프로그램을 非定期的으로 運營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름學期를 통하여 大學을 社會人們에게 憲策적으로 開放할 수 있는 轉機를 맞이한 셈이다. 단순히 教育講座水準이 아니라 社會各分野의 專門敎에 관련된 再敎育, 또는 補習敎育, 刷新敎育으로서 大學의 여름學期가 運營될 수 있도록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이들에게 學點을 取得하고 認定하며, 一定한 水準 및 量의 學點이 모아지면 이들에게 適切한 期間 동안 大學의 正規學期를 이수하게 하여 卒業과 同時に 學位를 취득하게 하는 方案과의 관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大學敎育의 機會를 適期에 갖지 못했던 많은 成人們에게 大學이 奉仕할 수 있는 重要한 그리고 매우 意義 있는 領域 中의 하나라고 본다. 正規敎科目履修를 통한 學點取得만을 위한 課程이 아니더라도, 여름學期는 職場人们的 휴가기간을 活用하여 短期特別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門戶를 개방하는 일에 適合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學期는 成人平生學習者들을 위한 定時制學生(part-time student)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觀點에서도 研究檢討될必要가 매우 크다. 결국 매우는 일에는 결코 中斷이란 있을 수 없고, 永遠한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언제고 돌아오기 위해 지금 일시적으로 停止(stop-out)하는 觀點의 變化가 여름學期에서 反映될 수 있는 可能性을 탐색해 볼 必要 또한 매우 크다.

3. 大學間의 協同體制와의 關聯

여름學期制의 設置는 大學間의 教授의 交流뿐만 아니라 學生들의 交流도 促進할 수 있는 方向에서 研究檢討되어야 한다. 前者的 경우 教授들은 여름방학 동안 가고 싶은 他大學에 가서 한 강좌를 받아 가르치면서 새로운 講座의 開設을 준비하거나 친필하는 일로써 相互交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는 共同研究 課題를 遂行하면서 팀·티이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大學間의 여름학기 동안의 教授交流는 기본적으로 教授各個人의 自律的 判斷과 意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充分한財政的·物的支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檢討하여야 한다.

學生들의 交流도 여름學期制를 構想하는 가운데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要素이다. 예컨대 어느 特定他大學에 가서 特定教授의 科目을 수강한다고 했을 때 그 學點을 인정해 주는 方案,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에 따른 行政的處理節次는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여름學期制는 構想되어야 한다. 이때 登錄金은 “學點當登錄金制”로 할 수 있는 方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經營管理體制와의 關聯

앞서 제Ⅱ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여름學期는 근본적으로 제한된 施設과 時間 속에서 教育課程 運營의 效率性과 效能性을 極大化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出發한다. 단순히 遊休施設의 活用이라는 차세보다는 施設의 經濟的活用이라는 觀點에서 여름學期制는 構想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學期制는 財政管理面에서 여러 가지 많은 要因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름學期의 講座를 擔當하는 教授들에 대한 적절한 報酬와 研究費의 支援, 여름學期受講生들에게 대한 適正한 水準의 登錄金 賦課, 여름學期 管理行政 部署의 設置 등은 經營行政의合理性 原則에서 신중하게 研究檢討 되어야 한다.

여름學期는 결코 分節된 또는 獨立된 特別學期가 아니다. 그것은 傳來의 두 學期와의 連續 속에서 經營管理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大學全體의 모든 學事行政과 經營管理體制의 內質을 提高하고자 하는 次元에서 여름學期가 構想되고 設計되는 本然의 趣旨라고 말할 수도 있다.

5. 改革推進過程과의 關聯

이번의 學期制改善의 構想은 그 自體가 상당히 주의 깊은 研究와 分析을 통하여, 그리고 大學人們相互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한 集團思考의 結果라는 데서 意義가 깊다. 그러나 앞으로 實際로 學期制를 改革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려

가지 난관들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學期制를 改善하는 作業의 具體的活動內容에 대한 면밀한 分析과 評價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學期制의 改善이 기존 2學期制度下의 教授와 學生들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들에 대한 심층적인 分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要求查定 過程을 통하여 各種 문제점과 구체적 실시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試驗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선구대학들을 선정하여 實驗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大學은 어느 社會組織보다도 더욱 복잡한 構造的 특징을 갖고 있다. 복합적인 사회조직으로서의 大學의 內在的動機形成과 自己更新의 自律的 분위기의 조성이 改革의 先決條件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IV. 結 言

學期制의 改善은 根本的으로 大學의 全體教育課程編成과 運營의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檢討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學期制의 改善은 단순히 여름學期를 開設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教授學習의 效率性과 經營管理의 效能性을 國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의 學期制의 改善이 要求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學期制의 改善은 그 自體가 결코 改革의 目標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立場에서 本稿에서는 美國의 諸般 學期制類型을 검토하였다. 大學教育協議會에서 이번에 전의한 學期制改善와 관련하여 볼 때, 美國의 4學期制, 3學期制 등에서 實施하는 여름학기는 앞으로 여러 大學들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分析하여 再檢討할 必要가 매우 크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여름학기에 대한 믿음과 教育的姿勢는 지금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믿음이나 차세와는 크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것이 곧 그들의 學期制를 이곳에 原形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實시해 온 데서 얻게 된 값진 경험이들, 특히 名大學에서 연구실험

된 學期制 改善方案과 그들의 改革節次에 대한 면밀한 分析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

<註>

- 1) A. Heiss, *An Inventory of Academic Innovation and Reform*, Cerkeley, Calif.: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73, pp. 47—49.
- 2) 金蘭洙 外 2人, 韓國高等教育改革의方向摸索,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1973, pp. 170—171.
- 3) Arthur Levine,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8, p. 209. (이 冊의 제 9 장 “The Structure of Academic Time”은 大學의 學期制에 대하여 綜合的 인 紹介를 하고 있음; Loyd C. Oleson, “Calendars,” Asa S. Knowles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Vol. 3,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p. 768.
- 4)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XV, No. 18 (January, 1978), p. 13.
- 5) O.C. Walz, *Academic Calendar Changes Effective 1978—1979*,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s Officers, 1979, p. 2.
- 6) Clifton F. Conrad,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Guide to Innovation and Refor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 179.
- 7) *Ibid.*, pp. 185—186.
- 8) William H. Bergquist, et al., *Designing Undergraduate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1, p. 14.
- 9) Arthur Levine, *op. cit.*, p. 235.
- 10) O.C. Walz, *op. cit.*, p. 2.
- 11) “Academic Calender,” *Tennessee Higher Education*, Vol. 6, No. 2 (Winter 1970), pp. 2—3.
- 12) Arthur Levine, *op. cit.*, p. 213.
- 13) A. Heiss, *op. cit.*, p. 47.
- 14) Arthur Levine, *op. cit.*, p. 237.
- 15) William H. Bergquist et al., *op. cit.* pp. 17—18.
- 16) Arthur Levine, *op. cit.*, p. 238.
- 17) W.S. Eddy, “Recycling Academic Calendars,” *AA-HE Bulletin*, Vol. 32, No. 2 (Oct. 1979), pp. 7—10.
- 18) Arthur Levine, *op. cit.*, p. 236.
- 19) O.C. Walz, *op. cit.*, p. 2.
- 20) W.S. Adams & T.H. Hoyt, *Reallocation of Time and Resources: The New Oshkosh Calendar Plan*, Oshkosh, Wisconsin: Univ. of Wisconsin-Oshkosh, 1976 (ED 127871), p. 72.
- 21) Arthur W. Chickering et al., *Developing the College Curriculum*, Washington, D.C.: Council for the Advancement of Small Colleges, 1977, p. 255.
- 22) Warren D. Wells, “Academic Calendars,” Asa S. Knowles (ed.), *Handbook of College and University Administration: Academic*,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0, pp. 2—102—2—110 (Chap. 8).
- 23) 金蘭洙 外, 平生教育論：哲學·心理·社會學的基礎, 서울: 文音社, 1982, p. 239.